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843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84327 판결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소955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관,공준식,구현정,김기훈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선 고 2021. 1. 14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소95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청구 또는 약정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8. 6. 14. 8백만 원, 2018. 6. 25. 2천 8백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4. D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1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18. 6. 20.에 128,000,000, 2018. 6. 25.에 2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D에게, 2018. 6. 20. G은행으로부터 128,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였고, 2018. 6. 25.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에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별거하게

되었고,피고는 2019. 5. 15.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고,C은 2019. 12. 23. 원고에 게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 5호증,을 저나 내지 5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w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3천 6백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백만 원은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1천 1백만 원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나머지 2천 1백만 원은 C과 피고에게 공동으로 대여한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이미 반환한 320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 1,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그 중 2천1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알고 그 반환을 약정한 바 있다.

나.판단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천 1백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돈의 반환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구소인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판사 정덕수판사 하성원